

# 2021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계획

정읍북초등학교

##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1) 지진, 폭우, 폭설,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2)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3)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4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·시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
- 5) 산업체 실습과정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,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6) 「초·중등 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시간
- 7)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,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- 8)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구 분	대 상	일 수	제출서류
결 혼	○ 형제, 자매, 부, 모	1	* 결석계[서식 1] * 관련 서류 (장례식장 확인서 등)
입 양	○ 학생 본인	20	
사 망	○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	
	○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○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	
	○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	

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
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
- 9)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을 하는 경우
  -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(월 1일 출석 인정)  
(생리인정결석 시 지각, 조퇴,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)
  - 제출서류: 결석계[서식 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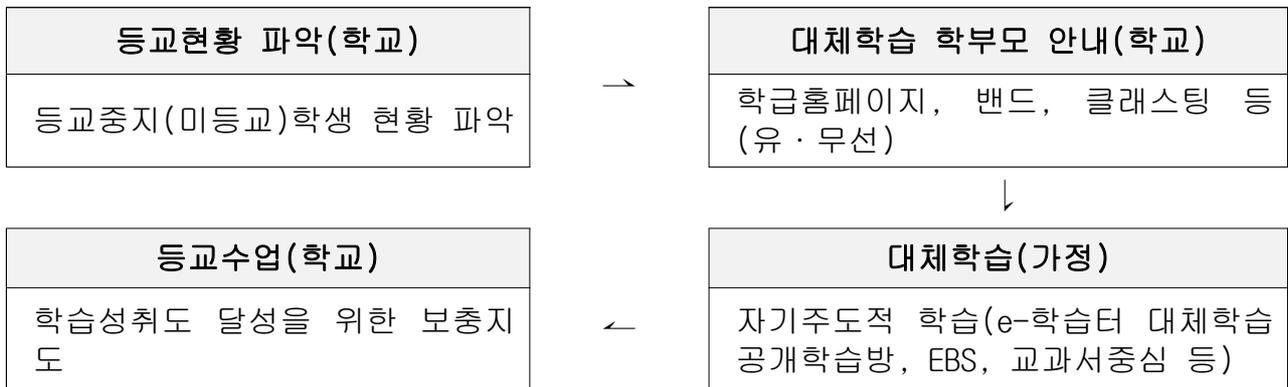
10)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대상학생(학교교육과-7845(2020.6.4.))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증빙자료
학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b>입원치료(입원격리) 통지서</b> 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2호 서식])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격리통지서
가족(동거인)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b>가족(동거인)의 격리 통지서</b>
	<유의사항>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	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b>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</b> (예: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(발급 가능시), 문자통지 사본 등)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증상 발현 학생) ※ 임상증상 발현시 ‘유·초·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따라 <b>선별진료소 방문·문의 필수</b>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시까지  ※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,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<b>의사의 소견</b> 등으로 확인 후 등교(방역지침 40쪽 참고)	<b>[코로나19 검사 결과 ‘음성’ 인 경우]</b>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, 문자통보 사본 등)
		<b>[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</b> 1.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. 학부모 의견서 3.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진료 확인서 등)

※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(수업)으로 인정

※ 등교중지 학생 학습공백 최소화: 학교교육과-8362(2020.6.16.)

- ▶ 적용 대상: 등교중지 학생, 고위험군 학생(별도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)
- ▶ 지원 과정 \*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이 조치에 해당없음



※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: 인성건강과-10135(2020.6.22.)

구분	등교기준	비고
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원칙: <u>선별진료소 가서 진료, 검사 받기</u></li> <li>- 검사결과 음성: 다음 날 등교</li> <li>-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 안한 경우 가정에서 휴식중 호전: 다음 날 등교</li> <li>- 귀가 후 3~4일 증상 지속, 악화되면 다시 선별진료소 문의</li> <li>- 증상에 대한 <u>치료약 복용 후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 가능</u></li> <li>- 당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</li> </ul>	
천식, 비염 등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에 대한 <u>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교 가능</u></li> <li>- 이환 여부 확인 안될 때 선별진료소 방문 내역과 해당 질환의 의사 소견서 제출 후 등교 가능</li> </ul>	

11) 기타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

- **결핵·홍역·콜레라·장티푸스·파라티푸스·파라티푸스·세균성이질·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·A형간염은 보고절차 준수 및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**
- 환자 및 의심증상자 발생 시 **신속한 격리(등교중지 포함)를 통한 확산 차단 강화**
  - ※ 집단검진 및 병원 등을 통한 개인 검진으로 환자 확인 시 가정과 연계한 공동 대응으로 등교중지 등 추가 감염 예방 철저
- **등교중지 기간: 완치되어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**

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

1.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.
2. 학교 밖 교육시설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 등) 이용과정에서 타 학생 감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정 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
3.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.
4. 완쾌 후 등교할 때는 선생님께 진료 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, 처방전 중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<관계법령>
- ◆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22조
  - ◆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, 동법 시행령 제47조
  - ◆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」 제8조 제2항
  - ◆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12) 예방접종

-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
-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
- 제출서류: 결석계[서식 1],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

13) 고위험군 학생

-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 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를 가진 학생
- 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, 경계’인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
- 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
- 제출서류: 결석계결석계[서식 1],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
-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 같음

**2 질병결석: 담임교사에게 사전연락**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	* 결석계만 제출 [서식 1]	* 5일 이내 제출
3일 이상의 질병 결석	1. 진단서(의견서) 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2. 결석계[서식 1]	
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	1. 미세먼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항 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진단서(의견서) 2. 결석계[서식 1] ※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질 환, 심혈관질환 등)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필요 ※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‘나쁨’ 이상이며, 학부모 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에 한하여 <b>질병결석</b> 으로 인정	* 5일 이내 제출 * 학기 초 최초 제출 한 진단서(소견서) 로 해당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같음 할 수 있음.
만성질환 학생	1. 진단서(의견서, 소견서) 2. 결석계[서식 1]	
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학생	1. 진단서(소견서) ※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에 한함. 2. 결석계[서식 1]	
고위험군학생	1. 진단서(소견서) 2. 결석계[서식 1] ※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‘관심, 주의’ 인 경우 해당(경계, 심각단계는 출석인정) ※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 화, 문자)한 경우	
건강장애 학생	1.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 확인서 2. 결석계[서식 1]	*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경우

### 3 미인정 결석 - 제출서류: 결석계[서식 1]

- 1)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
- 2)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(관련기관 연행, 도피)
- 3)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

【예】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,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

### 4 기타 결석 - 제출서류: 결석계[서식 1], 증빙서류

- 1) 부모, 가족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2)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3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### 5 지각·조퇴·결과

- 1) 지각: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- 2) 조퇴: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
- 3) 결과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4) 지각, 조퇴,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미인정, 기타 결석으로 처리
- 5)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

### 6 학년 수료

- 1)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.
- 2)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의 관리로 처리함.
- 3)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능

### 7 기타사항

- 1) 모든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
- 2)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‘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’ 이외 ‘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’ 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원격 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
- 3)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[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] 및 [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, 출결, 수업, 평가, 기록 가이드라인(학교교육과-1993(2021.2.9.))]의 지침을 따름.





# 학부모 의견서

정읍북초등학교

학생명	제 학년 반 번 이름:
기 간	2021년 월 월 ~ 2021년 월 일 ( 일간)
학부모 의견	<p>※ 반드시 1~5번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</p> <p>※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전화상담 필수</p> <p>1. 증상 확인 방법 :</p> <p>2. 증상 발현 내용 :</p> <p>3.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 : 방문(    ), 미방문(    )</p> <p>4.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선별진료소 전화 상담 내용 기록 :</p> <p>5. 병원 진료 후 진료 내용 :</p> <p>6. 기타 사항 :</p>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출결 사항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월 일

학부모 : (인)

정읍북초등학교장 귀하

결 재	담임	교감	교장
		전결	